

법 률

국회에서 의결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**인**

2017년 9월 19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박 상 기
법무부장관

●**법률 제14875호**

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

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法律 第4549號 登記特別會計法 부칙(法律 第6989號 登記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10365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항 중 “2017회계연도까지”를 “2027회계연도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여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**인**

2017년 9월 19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김 부 겸
행정안전부장관

●**법률 제14876호**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“5년”을 “4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6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7년 6개월”을 “6년 6개월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12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